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 590 호 2017. 9. 28(목)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48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남해군조례 제2249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
남해군조례 제2250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남해군조례 제2251호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남해군조례 제2252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남해군조례 제2253호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52
남해군조례 제2254호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 54
남해군조례 제2255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 56
남해군조례 제2256호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남해군조례 제2257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66
남해군조례 제2258호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남해군조례 제2259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76
남해군조례 제2260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8
남해군조례 제2261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87
남해군조례 제2262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3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23호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 96
남해군규칙 제1124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109
남해군규칙 제1125호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7
남해군규칙 제1126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129
남해군규칙 제1127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34

고 시

제2017 - 100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고시 …… 136
제2017 - 1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 139

공 고

제2017 - 906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0

회 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48호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수산업법 제2조제8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자격요건은 읍·면장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49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해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등과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점,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

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에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 군수는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불법 벽보·전단·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부군수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6미터 초과(지주이용 광고물은 최고높이를 포함한다)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

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현수막 표시기간 및 철거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보관일시,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

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위탁 받은 자에게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5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8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0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5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4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5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6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2,000원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2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당)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2,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3,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수수료
타. 입간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500매마다)	2,5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문들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옥상간판에 준함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25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33만원
- 1.3㎡ 이상 1.6㎡ 미만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58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92만원
- 2.6㎡ 이상 3㎡ 미만		117만원
라) 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2.6㎡ 이상 3㎡ 미만		75만원
라) 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 3.7㎡ 이상 4.4㎡ 미만		22만원
- 4.4㎡ 이상 5㎡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33만원
- 6㎡ 이상 8㎡ 미만		50만원
- 8㎡ 이상 1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경사항	⑲ 비고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고업등록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위치	⑫ 표시기간	⑬ 광고내용	⑭ 준공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번호		

364x257㎜[보존용지(1종) 70g/㎡]

(30) 제 590 호

남해군보

2017년 9월 28일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남 해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해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청번호	② 신청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일자	⑪ 검사구분	⑫ 검사결과	검사자			⑯ 비고
		③ 성명	④ 업소명	⑤ 주소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보존용지(1종) 70g/㎡]

남해군보 제590호 2017년 9월 28일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호	② 일시	③ 허가신고번호	광고주				광고물등의 내용				⑫ 비고
			④ 성명	⑤ 업소명	⑥ 전화번호	⑦ 주소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광고내용	

364x257㎜[보존용지(1종) 70g/㎡]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명서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생년월일	비 고

210x297㎜[보존용지(1종) 70g/㎡]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해군 조례 제2250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호시설 설치)”를 “(보호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1조”를 “제15조”로 하며 제2항제3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20조”로 하며 제3항제2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를 “(소요경비의 징수)”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 중 “제6조”를 “제13조”로 하고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51호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계약보증금 및 보증인)”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시장사용료 위탁징수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호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52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 다음에 제5장(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남해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53호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수준
2.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3.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절차를 위한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적격업소는 재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지정 표지판을 회수 한다.

③ 군수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재심사를 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3.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조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54호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기본 조례”를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해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해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해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 「남해군세 기본조례」에서” 를 “「지방세법」에서”로 한다.

제3조 중 “「남해군세 기본조례」 제5조”를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55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56호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며, 제2호 중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로 하고,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며, 제4호 중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써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조 제목 중 “공동거주시설”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로 하고 제1항 “공동거주시설”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하고 제3호 중 “독거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시설현황	명 칭	공동거주시설		
	소 재 지	경남 남해군 읍면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신청사유			공동거주희망 홀로사는노인수	남 : 명 여 : 명

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명.날인	비고

남해군수 귀하

마을주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마을주민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번	성 명	성별	주 소	서명.날인	비고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증명서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고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남,여)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시설의 명칭			
	시설의 소재지			
	입 소 자		남: 명	남: 명
			여: 명	여: 명
	시설의 대표자	성 명	(남,여)	(남,여)
		생년월일		
		주 소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시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남해군 조례 제2257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32조”를 “제40조” 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는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제26조제2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을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장 등 있는 정신

병원”으로 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제8항 본문 중 “세 차례”를 “두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만 심의할 수 있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8 제1호자목 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남해군 조례 제2258호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선납하여야 한다.”를 “공사 시작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59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이하"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영”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을 제외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 금액
2. 법 제8조에 따른 화장실 관리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60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부피·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수수료는 별표 1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③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한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 제13조, 제13조의2, 영 제7조 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제9조 관련)

[단위:원]

규 격	용 도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10	10	120
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58	42	600
12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820	180	3,000
1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3,384	216	3,600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제10조 관련)

[단위:원]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5ℓ (단독주택용)	분홍색	가로14.5㎝ × 세로3㎝	유포지	
20ℓ (업소용)	초록색			
120ℓ (공동주택용)	파란색			
120ℓ (업소용)	주황색			

[별표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제12조 관련)

가.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

○ 남해읍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단, 북변1·2, 유림1·2, 서변, 남산, 남변, 죽산, 봉전, 신기마을에 한함

○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나. 기타지역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남해군 조례 제2261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도시림등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

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 업무담당과장
5. 업무관련 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수종의 선정) 군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3.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수종

제5조(식재 기준) 도로 노선별로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 · 관리하고 다음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 간격은 6m에서 8m까지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제공, 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식재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마. 도로변 식재는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생육을 돕기 위하여 보호틀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엽토, 퇴비, 보습제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후 식재하여야 한다.

2. 관목(키 작은나무)

가. 식재 간격은 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다. 지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기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 시기) 가로수를 심는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다.

1.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3.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며, 비용은 별표1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참여 등)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 피해 발생 시 신고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성별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위 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기준(제8조 관련)

∧피해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경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이식하는 경우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남해군 조례 제2262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군 소속”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을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에서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실·과·단·소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무주관 담당 실·과·단·소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민원봉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포상자				포상하게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
				직위또는 직명	소속또는 주소	성명	성별			

* (포상종별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남 해 군 공 보

(96) 제 590 호 2017년 9월 28일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23호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 ①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남해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73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한다.

②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주소·연락처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일자	미교부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송달일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부군수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 기분	책호 /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자	담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담당자	담당	과장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106) 제 590 호

2017년 9월 28일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재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 등재	년 월 일	(인)
담당		충당통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충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충당 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남해군 규칙 제1124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수는「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

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2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4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결의서**

징 수 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분 임 징 수 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 세 고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 당		납 액 통 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 당 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 입 연 도	년도 세입

세입과목 항	세입과목 목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세 액			
		가 산 세			
		결 정 액			

결 정 세 액	금 원(₩)		
납 세 인 원	(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 요	년 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구분 /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담당	과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목 [ ]세 /세목구분 [ ] /군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납부 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 도
결의년월 : 년 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백상지 80g/㎡)

2017년 9월 28일 남해군 공보 제 590 호 (119)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도 ○ ○기(월)분 (○ ○ 읍·면)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군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364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주거 확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산 확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과세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 기한	체납액			결손처분 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

남해군 규칙 제1125호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2. 공적조서
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
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
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26호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심사”는 남해군으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2. “사후평가”는 남해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개최하거나 지원 받기 위하여 자력으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심사) ① 사전심사는 매년 10월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축제에 대한 사전심사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축제의 사전심사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신규(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축제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사전심사는 별표의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축제평가) ① 사후평가는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60일 안에 실시한다.

②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실시하며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모에 따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상대평가는 축제에 소요된 총 경비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실시하며, 절대평가는 총 경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방식별 등급비율과 예산반영 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식	구 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상대평가	등급비율	5% 미만	15% 미만	60% 미만	15% 이상	5% 이상
	예산반영	증액가능	증액가능	현행유지	10% 이상 삭감	재검토
절대평가	예산반영	증액가능	증액가능	현행유지	10% 이상 삭감	재검토

제5조(현장점검) ① 남해군 축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와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은 각 축제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점검에 참여한 위원은 축제를 종료한 날부터 15일 안에 별지 서식의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전심사지표 및 평가표(제3조 관련)

1.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구 분	심사항목	심 사 지 표	평가배점	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	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5	
		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	5	
		소 계	**20**	
	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	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	
		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소 계	**15**	
운영 및 관리 (25점)	축제운영 및 관리 적정성 (25)	3-1.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는가?	10	
		3-2. 직전 축제의 운영·관리상 오류를 시정하였는가?	5	
		3-3. 축제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0	
		소 계	**25**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달성 및 축제평가 결과의 환류 (40)	4-1. 계획한 인적·물적 규모, 간접효과 등 사업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15	
		4-2. 준비 및 운영 주체의 축제 결과에 대한 수용 자세가 건전한가?	5	
		4-3.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10	
		4-4.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을 사업시행 구조 개선에 환류하여 반영하였는가?	5	
		4-5. 관광객과 주민의 대체적인 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따른 사안별 후속대책을 강구하였는가?	5	
		소 계	**40**	
합 계		100		

2. 신규 또는 불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구 분	심사항목	심 사 지 표	평가배점	평가결과
기획 및 단위계획 (35점)	축제기획의 적정·합리성 (2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10	
		1-2. 다른 축제 등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3. 축제 구성이 적절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	
		1-4. 축제의 도입(시행) 목적과 추진 주체의 의지가 명확하고 건전한가?	10	
		소 계	**35**	
	단위계획의 적정·합리성 (15)	2-1. 사업목적과 단위계획이 서로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2-2. 단위계획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10	
		소 계	**20**	
지역특성 구현 및 주민생업 지원	주민생업과 문화적 정서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3-1. 주민의 생업과 생활문화 특성이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10	
		3-2. 지역산업 또는 정서가 축제와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가?	10	
		소 계	**20**	
지역주민 화합 및 단합의지	지역주민의 축제의지 및 자발적 참여	4-1. 비용의 부담, 재능기부 등 지역주민의 축제 시행 주체의식이 있는가?	15	
		4-2. 주민 또는 관계 구성원 등의 다수가 축제 개최에 동의하고, 참여 의지가 분명한가?	10	
		소 계	**25**	
합 계		**100**		

[별지서식]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점검위원(남·여) : (서명 또는 인)

1. 축제개요

축제명			
장 소		기 간	
주 최		후 원	
대표자		사업비	

2. 분야별 점검 사항

가. 축제의 성장성 및 잠재력

직전대비 성장성	
향후 성장잠재력	

나.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등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관광객 참여	축제 주제 및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

다. 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설명	접근 편리성	이용 편의성	운영 및 관리실태

라. 축제 홍보의 효율성 및 적절성

분 야	홍보방법	홍보내용	적절성

마. 축제 운영 안전관리 체계

실행사항	취약점	기 타

바. 축제의 매력 및 경제적 파급 효과

1) 축제의 매력

2) 경제적 효과

남해군 규칙 제1127호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9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	구경 m/m		모타펌프 대		기 타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폐수	㎥/일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3. 타인이 토지 또는 건물 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100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남 해 군 수

1. 고시명 :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규약제정 목적 규정(제1조)
   나. 협의회 회원 규정(제4조)
   다. 임원 및 임기, 임원의 역할 등 규정(제5조~제6조)
   라.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마.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제9조)
   바. 협의회의 재정 및 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제11조)
   사.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제12조)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

제4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거제시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의 관광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실 · 과를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시 · 군의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재정운용,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3. 국내외 관광 · 여행 관계 기관 · 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 시행
4.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5.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6. 공동 시티투어사업
7.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협의회의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세입세출결산안은 그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회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회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의제가 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합의)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남해군 고시 제2017 - 10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입현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관매달기 4개소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623-1번지
6. 점용면적 : 10.8㎡
7. 점용기간 : 2017. 9. 11. ~영구

(140) 제 590 호 남 해 군 공 보 2017년 9월 28일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906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 가축 사육자의 의무사항을 신설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신설(안 제4조제4호 및 제7호)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자 의무사항을 신설(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9월 2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과 환경지도팀(전화 055-860-32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4조제3호 중 “도매시장”을 “도매시장, 가축시장”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제4조제6호 중 “20퍼센트”를 “이 조례 시행 전(2013. 5. 8. 이전) 당시 시설면적의 20퍼센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악취저감 대책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을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 주거밀집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소·젖소·말·사슴·양 : 200m이내 -돼지·개·닭·오리·메추리 : 500m이내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으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애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에서 규정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등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말, 개, 양, 사슴 : 5두 이하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 ———————————————— ———— . 1. ~ 2. <생 략>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 가. ————————————

나. 닭, 오리 : 20수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5.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기존 시설을 개축 또는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6 —————————— —————————— ——————————또는 이 조례 시행 전(2013. 5. 8. 이전) 당시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신 설>	7.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악취저감 대책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을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신 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 각 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환경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